

# 지속가능경영 행동규범

(주)에이팩트

## 제1장 노동 인권

### 제1조 (노동인권의 보장)

- ① 회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한다.
- ② 전항은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실습생, 파견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③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는다.

## 제1절 강제근로 금지

### 제2조 (자발적 근로)

- ①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 ② 회사는 강제 근로자, 인신구속계약(채무변제를 위한 숙박 포함)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죄수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신분증 등 양도 요구 금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 제4조 (취업 보증금 및 고용조건 등 요구 금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취업의 일환으로 보증금이나 채용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또한, 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지불되는 비용(채용 전 건강검진 비용 포함), 담보금, 채무, 중간착취 등은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법과 회사의 규정 및 프로세스에 위반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정신적, 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하지 않습니다.

### **제5조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법률이 정한 필수기재사항과 기타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 **제2절 미성년 근로자 보호**

### **제6조 (아동 고용의 금지)**

- ① 회사는 아동 근로자를 절대 고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아동"은 15세(「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 ③ 회사는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즉시 아동 근로자 고용을 중지하고 고용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연령 검증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 **제7조 (실습생 등 청소년 근로자 고용)**

- ① 회사는 실습생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경우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 ② 회사는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잔업, 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하게 하지 아니한다.
- ③ 학생/인턴/견습생에게 전공 분야 또는 신규 직업 교육과 관련된 작업만을 수행시키며 관련 법률에 의해 금지된 작업은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 제3절 근로시간 준수

#### 제8조 (근로시간의 준수)

- ① 근로시간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② 표준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비상 또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보장한다.

### 제4절 임금 및 복리후생

#### 제9조 (임금 및 초과근로)

- 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하며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한다.
- ②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제10조 (징계에 의한 임금삭감 금지)

회사는 징계 조치의 수단으로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임금명세서의 교부)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 및 항목에 대하여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면,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한다.

## 제5절 인도적 대우

### 제12조 (비인도적 대우의 금지)

- ①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거나 그러한 위협을 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한다.

## 제6절 차별 금지

### 제13조 (차별 금지 조치)

- ① 회사는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 ② 회사는 채용과정과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 성향,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조합원 신분,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법률이나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 제7절 결사의 자유

### 제14조 (결사 및 소통의 자유 보장)

- ① 회사는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사원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하고,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한다.

- ② 회사는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괴롭힘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회사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2장 안전 보건

### 제15조 (안전 보건 보장 활동)

회사는 제품 생산 등 회사 업무상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1절 산업 안전

### 제16조 (안전 조치 및 안전 교육)

- ① 안전 위험(예: 화학물질, 감전, 화재, 차량, 추락 위험 등)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들은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적 차원의 유지 관리, 안전한 작업 절차(잠금장치, 보호장치) 구축을 통해 파악, 평가 및 통제하며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전항에 명시된 수단으로 위험 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제공한다.

### 제17조 (임신 또는 수유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조치)

임신 또는 수유기의 여성 근로자는 유해 작업 근무에서 제외시키고, 건강 및 안전 위험이 있는 작업 근무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등 합리적인 단계적 조치를 취하며 수유기 여성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 제2절 비상사태 대비

### 제18조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 ①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한다.
- ②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와 근로자 공지 및 대피 절차 등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 비상 대피 훈련과 쉽게 찾을 수 있고 방해물 없이 탈출이 가능한 출구 시설,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확보, 복구 계획을 포함한 비상사태 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 제3절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 제19조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시스템)

- ① 회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한다.
- ② 전항의 절차와 시스템에는 (a) 근로자가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b) 산업 재해 및 질병을 분류하고 기록하며 (c)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고 (d) 각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함으로써 (e)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근로자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조항들을 포함한다.

## 제4절 유해인자 노출 저감

## 제20조 (유해인자 노출 저감 조치)

- ① 회사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병원균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인자 및 고온,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한다.
- ② 회사는 잠재적 위험 제거 또는 생산시설에 대한 교정, 개선 등의 기술적 통제, 법적·제도적 요건에 따른 행정적 통제를 통해 전항의 유해요인들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③ 전항의 수단으로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고 잘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④ 회사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 시 위험요소와 연관된 리스트에 관한 교육 자료가 포함되도록 한다.

## 제5절 신체부담 업무

### 제21조 (신체부담 업무에 대한 조치)

회사는 근로자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서 있는 작업, 그리고 체력 소모가 많은 조립 업무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한다.

## 제6절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 제22조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 ① 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한다.
- ② 회사는 근로자들이 상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물리적 보호 장치, 연동 장치, 방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한다.

## 제7절 기숙사 및 위생 시설 제공

### 제23조 (기숙사 및 위생 시설 제공)

- 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시설을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 ②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청결하고 안전한 기숙사를 제공하며, 적절한 조명, 비상 탈출시설, 난방 및 환기시설, 개인물품 보관함, 합리적 수준의 출입 권한과 함께 적절한 개인 공간을 제공한다.

## 제8절 안전보건 교육

### 제24조 (안전보건 교육)

- ① 회사는 근로자에게 모든 확인된 작업장 위험 (기계, 전기, 화학물질, 화재 및 신체적 위험 등)에 대해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한다.
- ③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하며 그 이후에도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 ④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 문제를 발견한 경우 이를 회사에 보고하도록 장려한다.

## 제3장 환경 보호

### **제25조 (환경보호 노력)**

- ① 회사는 기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며 삼성전자에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할 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 ③ 회사는 삼성전자가 제품 설계, 생산 등에 필요한 환경 기준을 기타 계약에서 요구한 경우 이를 준수한다.

## **제1절 환경 인허가 취득**

### **제26조 (환경 인허가 취득 의무)**

- ① 회사는 기업 운영 상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예: 대기배출시설 등)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 ② 회사는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 **제2절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 **제27조 (오염방지 및 자원절약)**

- ① 회사는 오염원의 배출 및 폐기물 발생은 오염원 제어 설비 추가 등을 통해 최소화하거나 제거한다.
- ② 회사는 물, 화석 연료, 광물 및 원시림을 포함한 천연 자원의 사용은 생산 프로세스 개선, 유지 관리 강화, 설비 공정의 변경, 대체 자재, 재사용, 보존, 자재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보존한다.

### 제3절 유해물질 관리

#### 제28조 (유해물질 관리)

회사는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 물질 및 기타 물질은 안전 취급, 운송,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식별 표기, 라벨링 등 별도로 관리한다.

### 제4절 고형 폐기물

#### 제29조 (고형 폐기물 관리)

회사는 고형 폐기물(비유해성)을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 저감 및 폐기·재활용한다.

### 제5절 대기오염물질

#### 제30조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 ① 회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과 공정에서 발생된 연소 부산물은 그 특성을 파악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법규에 따라 관리·처리한 뒤 배출한다.
- ② 회사는 대기오염방지 설비의 처리효율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

### 제6절 수자원 관리

### 제31조 (수자원 관리)

- ① 회사는 체계적으로 우수오염을 예방하며, 불법 배출과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오염물질의 우수관거 유입을 방지한다.
- ② 회사는 수자원, 사용 및 배출을 문서화, 특성화 및 모니터링하는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 ③ 회사는 물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오염 경로를 통제한다.
- ④ 회사는 모든 폐수를 배출 또는 폐수처리 이전에 특성화, 모니터링, 통제 및 처리한다.
- ⑤ 회사는 최적의 성능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폐수 처리 및 밀폐 시스템의 성능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제7절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 제32조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 ① 회사는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배출 Scope 1, 간접 배출 Scope 2)을 산정하고 기록한다.
- ② 회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다.

## 제4장 윤리 경영

### 제33조 (윤리 경영 의무)

회사의 경영활동은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유지한다.

## 제1절 청렴성

### 제34조 (거래 관계상의 청렴성 유지)

- ① 회사는 모든 사업 상 거래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한다.
- ② 회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무관용 정책을 적용한다.

## 제2절 부당이득 금지

### 제35조 (부당이득의 금지)

- ① 회사는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제안·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허가하거나,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 ② 사업기회를 획득·유지하거나, 타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그 외 부적절한 이득을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가치를 약속·제안·제공하거나, 이의 제공을 허가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모두가 전항에 해당한다.
- ③ 회사는 반부패 법규관련 컴플라이언스 확보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 제3절 정보공개

### 제36조 (거래의 투명화 및 정보의 공개)

- ① 회사는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하며 회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한다.

- ② 회사의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 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한다.
- ③ 회사는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표기를 하지 아니한다.

## 제4절 지적재산 보호

### 제37조 (지적 재산권의 존중 및 보호)

- ① 회사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
- ②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며 삼성전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 제5절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 제38조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 준수)

회사는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한다.

## 제6절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 제39조 (내부 고발자의 보호 및 보복금지)

- ① 회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및 내부 고발자의 신원 보호 프로그램(비밀 및 익명성 보장)을 운영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절 개인정보 보호

### 제40조 (개인정보 보호 의무)

- ① 회사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제5장 경영 시스템

### 제41조 (경영 시스템의 구축)

- ① 회사는 본 규범뿐 아니라 관련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인권 및 노동 관행, 안전보건, 환경, 윤리를 기업 경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 ② 전항의 시스템에는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정기적인 측정 및 성과 평가, 그리고 지속적 개선 수행을 포함한다.

## 제1절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 제42조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 ① 회사는 경영 시스템과 규범 관련 프로그램 이행 및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정한다.

-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경영 시스템 현황을 검토한다.

## 제2절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 제43조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프로세스 구축)

회사는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경영 절차 내 반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 제3절 리스크 관리

### 제44조 (리스크 관리)

회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환경, 산업안전보건, 인권 및 노동 관행, 윤리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각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기술적 또는 행정적 통제를 이행하여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제4절 개선 목표 수립

### 제45조 (성과 개선 목표 수립·실행·평가)

회사는 사회,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목표 및 실행 계획을 문서화하고, 해당 문서에는 목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제5절 교육

#### **제46조 (교육 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

회사는 회사의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이행하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한다.

### **제6절 의사소통**

#### **제47조 (의사소통 프로세스 구축)**

회사는 회사의 정책, 관행, 기대사항 및 성과와 관련된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해 근로자, 협력회사 및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 **제7절 임직원 피드백, 참여 및 고충처리**

#### **제48조 (의견 취합 및 개선 촉진 프로세스 구축)**

회사는 본 규범에서 다루는 조건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 **제8절 심사와 평가**

#### **제49조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회사는 회사와 거래하는 2차 협력회사 및 그 하위의 협력회사들이 사회적·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법규 요구사항, 본 규범의 내용 및 거래계약에 명시된 삼성전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제9절 시정조치 프로세스

### 제50조 (시정조치 프로세스 구축)

회사는 내부 또는 외부평가, 검사, 조사 및 검토에 의해 확인된 미비점을 적절한 시간 내에 시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 제10절 문서와 기록

### 제51조 (문서와 기록의 적합성)

- ① 기업 운영 상 보관되는 문서 및 기록의 작성, 유지는 외부 공시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고, 회사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밀 관리 요건의 적합성에 부합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문서화하고, 삼성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한다.

## 제6장 공급(망) 협력업체 관리

### 제1절 준수의지 표명

#### 제52조 (준수의지 표명 및 게시)

회사는 경영진이 승인한 기업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성명서를 회사의 전 작업장에 현지 언어로 게시한다.

### 제2절 제품 내 물질 규제 준수

### 제53조 (물질 규제 준수)

회사는 물질에 대한 재활용 및 폐기 시 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Directive 2015/863/eu) 및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규정(Regulation (EC) No 1907/2006)을 준수한다.

## 제3절 책임있는 물자 관리

### 제54조 (책임있는 물자 관리)

- ③ 회사는 국제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사용을 제한하는 특정 원산지의 광물(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코발트 등)과 불법 벌목된 목재의 원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④ 대량파괴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생산 가능성이 높은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의 국가로 수출된 삼성전자 제품에 포함된 자재는 반드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한다.
- ⑤ 회사는 국제 규정과 국가별 법규를 준수하는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⑥ 회사는 관련 물질의 원산지, 거래처 등을 포함한 모든 공급망에 대해 물질 사용 여부를 추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 공정에서 사용 물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객의 요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 제4절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 제55조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 ① 회사는 관련 공급업체, 계약자 등과 본 규범에서 지향하는 책임있는 기업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업체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업체의 책임 이행을 감독하는 의무를 수행한다.
- ② 전항에는 실행 책임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 중단까지도 포함한다.

## 부 칙

### 제1조(규범의 비치)

회사는 본 규범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조(준용)

본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 제3조(시행일)

본 규범은 2024년 3월 18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단, 본문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